

[붙임5]

파주시 파인(FINE)주택 매입형 입주대상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

1. 입주신청 내용 중 주요사항(주소, 세대구성, 주택소유 여부,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파주시에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 파주시가 실시하는 사후 주거실태조사 및 입주자격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거주 여부 및 입주자격 유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파주시 파인(FINE)주택 매입형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 제출 필요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③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④ 임대차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본인의 사유(잔금납부 불이행)로 입주하지 못한 경우

※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제외

⑤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⑥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주시의 동의 없이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임대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⑧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⑨ 입주대상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에서 정한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⑩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입주자는 임대주택 및 내부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청년 유형 공급주택에 설치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침대 및 수납가구 등 기본 비품은 파주시 소유의 물품으로, 입주자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관리하여야 합니다. 입주기간 중 비품의 고장·하자 등에 대한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을 파손·분실하거나 임의로 반출·처분한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7. 입주 후 입주청소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파주시에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8. 세대 내 흡연은 금지합니다.
9. 파주시는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 주소지 유지 여부, 주택소유 여부 등 입주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입주자격 또는 입주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파주시 파인(FINE)주택 매입형 입주대상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_____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